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공 보

제1359호 2021년 11월 26일(금)

훈 령

○ 속초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3

고 시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93호선, 소로3-332호선)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5
○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1-12호선)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9

공 고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 10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 12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 14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호선) 사업 공사완료 공고 ····· 16
○ 속초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청초호유원지) 사업 공사완료 공고 ····· 17
○ 제4차 속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열람 공고 ····· 18

입법예고

○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 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25

발행 : 공 보 감 사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11월

속초시장 김 철 수

속초시 훈령 제 758호

속초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속초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부 서 별	계	직 종 별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청원산림)
계	**229**	**50**	**156**	**5**	**3**	**15**
공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10		10			
기획예산과						
관광과	7		7			
문화체육과	2	2				
세무과	2	2				
회계과	9	1	5			3
민원토지과	5	5				
일자리경제과	2	2				
신성장사업과						
주민생활지원과	6	5	1			
가족지원과	1	1				
교육청소년과	14	12	2			
환경위생과	8		8			
건설도시과	5			5		
안전총괄과	17	1	16			
건축과	3	1	2			
교통과	7		7			
공원녹지과	14		11			3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6	1	5			
보건소	22		22			
상수도사업소	20	2	12			6
하수도사업소	7		6			1
시립박물관	12	1	9			2
환경자원사업소	4		1		3	
도서체육센터	32		32			
영랑동	2	2				
동명동	1	1				
금호동	1	1				
교동	1	1				
노학동	2	2				
조양동	2	2				
청호동	1	1				
대포동	1	1				
시의회	3	3				

속초시 고시 제2021-148호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93호선, 소로3-332호선)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93호선, 소로3-33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과 같은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중앙동 468-14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93호선, 소로3-332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93호선, 소로3-332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성명 및 주소: 당초) 아시아신탁㈜ 대표 배일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변경) ㈜빌드에셋 대표 손찬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25, 5층(대치동, 대동빌딩)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사업 규모	비고
도 로	소로 1-93호선	B=10~11m, L=74m	B=10m, L=74m	
	소로 3-332호선	B=6.5m, L=43m	B=6.5m, L=43m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당초)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0. 31.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0. 31.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명	시설의 세분	시설규모	면적	비 고
도 로	소로 1-93호선	B=10~11m, L=74m	254㎡	도시계획도로 내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
	소로 3-332호선	B=6.5m, L=43m	263㎡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소로1-93호선)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			비고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1	당초	중앙동	468-216	대	5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변경	중앙동	468-216	대	5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2	당초	중앙동	468-20	대	19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변경	중앙동	468-20	대	19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3	당초	중앙동	468-71	대	26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변경	중앙동	468-71	대	26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4	당초	중앙동	468-142	대	81	8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변경	중앙동	468-142	대	81	8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5	당초	중앙동	468-195	대	20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변경	중앙동	468-195	대	20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6	당초	중앙동	468-72	대	36	3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변경	중앙동	468-72	대	36	3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			비고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7	당초	중앙동	468-261	대	33	33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시아신탁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주식회사				
	변경	중앙동	468-261	대	33	3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8	당초	중앙동	468-262	대	4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변경	중앙동	468-262	대	4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9	당초	중앙동	468-120	대	69	29	113/129		속초시				
							7/129		속초시				
							6/129	속초시 장사동 632-86	한남수				
							3/129	서울 강동구 길동 401-3	이봉선				
	변경	중앙동	468-120	대	69	29	113/129		속초시				
							7/129		속초시				
							6/1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3/129	서울 강동구 길동 401-3	이봉선				
10	당초	중앙동	468-264	대	1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변경	중앙동	468-264	대	1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합계		**당초**	**10필지**		**294**	**254**							
		변경	**10필지**		**294**	**254**							

■ 토지조서(소로3-332호선)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			비고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1	당초	중앙동	468-120	대	69	24	113/129		속초시				
							7/129		속초시				
							6/129	속초시 장사동 632-86	한남수				
							3/129	서울 강동구 길동 401-3	이봉선				
	변경	중앙동	468-120	대	69	24	113/129		속초시				
							7/129		속초시				
							6/1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3/129	서울 강동구 길동 401-3	이봉선				
2	당초	중앙동	468-292	대	59	5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변경	중앙동	468-292	대	59	5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3	당초	중앙동	168-289	대	1	1			국(기획재정부)				
	변경	중앙동	168-289	대	1	1			국(기획재정부)				
4	당초	중앙동	468-282	잡	133	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변경	중앙동	468-282	잡	133	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5	당초	중앙동	468-283	잡	45	4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변경	중앙동	468-283	잡	45	4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6	당초	중앙동	468-290	대	1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변경	중앙동	468-290	대	1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합계		당초	6필지		308	263							
		변경	6필지		308	263							

속초시 고시 제2021-149호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1-12호선)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1-1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1월 26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교통 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1	12	10	국지도로	200	중로1-5 도문1311-2답	도문1400-2천	일반도로	2021. 11. 26. (속고 제2021-149호)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소로1-12	◦ 노선신설 - L=200m, B=10m	◦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따라 진·출입로 개설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속초시 공고 제 2021 - 11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2021년도 반복부과분)처분 통보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1. 19. ~ 2021. 12. 03.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성 명	주 소	내 용	부과액(원)	송달불능사유
양*성, 김*진	강원도 속초시 논산길 17, 10*동 1**2호 (조양동, 휴먼빌아파트)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1,042,200	주소 불명
김*호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3길 4*-3*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3,496,730	〃
신**관광개발 주식회사	강원도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2**(동명동)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4,674,910	〃
재단법인 **유치원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2*5 **유치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2,461,360	〃
홍*명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6길 2*(영랑동)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4,821,600	〃
전*남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2*8(동명동)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519,180	〃
김*순	강원도 속초시 청호해안길 2*(조양동)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1,575,500	〃
최*우	강원도 속초시 청대마을길 20, 10*동 30*호 (조양동,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460,610	〃
심*흠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주천강로 1**7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103,750	〃
문*례	강원도 속초시 온천로 2*5(교동)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2,856,380	〃
김*정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167번길 8-*(금호동)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567,310	〃
이*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32, *동 90*호 (가락동, 삼환가락아파트)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572,880	〃
안*섭	강원도 속초시 새마을4길 3*-*(조양동)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473,760	〃
전*경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길 5*(대포동)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247,380	〃
이*학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207, 10*동 40*호 (조양동, 삼성쉐르빌아파트)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288,480	〃
김*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108번길 2*(금호동)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2,596,420	〃
장*춘, 차*자	강원도 속초시 청대마을길 20, 10*동 1**6호 (조양동,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803,210	〃
김*미	강원도 속초시 새마을4길 3*-*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3,479,050	〃
김*애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0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3,862,320	〃

4. **공시송달내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2021년도분) 처분 통보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 기간 내에 속초시 건축과(☏639-2472)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 11. 17.

속 초 시 장

속초시 공고 제2021 - 12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인 공동주택 세대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점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한 바 있으나, 시정명령 전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관계로 시정명령 취소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1. 22.

속 초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1. 22. ~ 2021. 12. 06.(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대상

연번	대상(위치)	알림내용	송달불능 사유
1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12동 103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취소 알림	폐문부재
2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12동 101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취소 알림	폐문부재
3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15동 101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취소 알림	폐문부재
4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11동 101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취소 알림	폐문부재
5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04동 404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취소 알림	폐문부재
6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16동 402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취소 알림	폐문부재
7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11동 401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취소 알림	폐문부재
8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02동 403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취소 알림	폐문부재

5. 공시송달내용

◦ 귀하께서 소유(점유)하고 있는 우리 시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자진철거할 것을 속초시 건축과-16999(2021.04.21.)호로 시정명령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전 「행정철자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관계로 시정명령 취소함을 알려드리오며, 아울러

「건축법」위반사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 재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속초시 공고 제2021 - 12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공동주택 세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94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등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한 바 있으나, 시정명령 전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관계로 시정명령 취소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1. 22.

속 초 시 장

1. 공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1. 22. ~ 2021. 12. 06.(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대상

연번	대상(위치)	알림내용	송달불능 사유
1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12동 103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취소 알림	폐문부재
2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12동 101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취소 알림	폐문부재
3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15동 101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취소 알림	폐문부재
4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11동 101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취소 알림	폐문부재
5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06동 102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취소 알림	폐문부재
6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16동 101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취소 알림	폐문부재
7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15동 103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취소 알림	폐문부재
8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건축물	폐문부재

	테르바움 114동 101호	시정명령(자진철거) 취소 알림	
9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02동 101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취소 알림	폐문부재

5. 공시송달내용

◦ 귀하께서 소유(점유)하고 있는 우리 시 건축물(공동주택) 위반사항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4조(공사의 중지 등)에 따라 자진철거 할 것을 속초시 건축과-17058(2021.04.21.)호로 시정명령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전 「행정철자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관계로 시정명령 취소함을 알려드리오며,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위반사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 재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속초시 공고 제2021-1209호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호선) 사업 공사완료 공고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호선)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영랑동 13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5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5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케이비부동산신탁㈜ 대표 서남종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사업 규모	비고
도 로	소로 3-5호선	B=6m, L=117m	B=6m, L=117m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2019. 02. 08. ~ 2021. 11. 05.

5.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및 모든 구조물 귀속

속초시 공고 제2021-1210호

속초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청초호유원지) 사업 공사완료 공고

속초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청초호유원지)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교동 1024-1,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청초호유원지)
   ◦ 명칭: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휴먼스테이㈜ 대표 고원기
   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8길5 12층(역삼동, 스타팅빌딩)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사업 규모	비고
유원지 (청초호유원지)	휴양시설	건축면적 5,890㎡ 연 면 적 70,680㎡	건축면적 5,708.46㎡ 연 면 적 59,577.12㎡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2018. 12. 21. ~ 2021. 11. 04.

5.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귀속대상 토지 및 모든 구조물 귀속

속초시 공고 제2021-1211 호

제4차 속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열람 공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등)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 중인 「제4차 속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22.

속 초 시 장

1. 공 고 명 : 제4차 속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2. 공고내용
   가. 개요
      1) 시간적 범위 : 2022년 ~ 2026년(5년간)
      2) 공간적 범위 : 속초시 전역 및 인접 지역 일부
   나. 주요내용
      1) 교통약자의 현황 및 수요전망
      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분석
      3) 관련계획
      4)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5) 세부추진 방안
      6) 재원조달방안
3. 열람 관련사항
   - 열람기간 : 2021. 11. 22. ~ 12. 7. (15일간)
   - 열람장소 : 속초시청 교통과 (☎ 033-639-2368, FAX 033-633-5006)
   - 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제출

[붙임]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제4차 속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22~2026)			
제 출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의 견				

제4차 속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속초시 공고 제2021-1195호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행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여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률 위임사항 반영을 위한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0조)

- 보행환경개선위원회 → 지역보행안전편의 증진위원회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건설도시과(도로관리팀)

2) 연락처 : 전화 033-639-2663(도로관리담당)

FAX 033-639-249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도로관리팀(033-639-26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보행환경개선위원회) ①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속초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예산계획과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해당 연도 사업평가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주민협정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6.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42호

「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관인생략)

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11. 19. ~ 2021. 11. 24.(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최종현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최종현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종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1. 11. .

발 의 자 : 최종현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취업·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취업자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취업·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창업 지원 사업 (안 제4조)

다.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지도·감독 (안 제5조, 제6조)

라. 재정지원 관련사항 (안 제7조)

마. 일자리 관계기관·기업과의 협력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및 창업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등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창업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취업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4.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위한 사업
5.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창업지원센터(이하“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업

무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창업지원센터 지도·감독)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 등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창업사업자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기업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기업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지원 서비스 추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법인 등을 선정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자. 생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하. 생략

4~6. 생략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

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